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8월 26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8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8년 9월 9일) 상정
-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8년 9월 9일) 수정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 제안이유

- 부천시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폐지하고 주민투표 청구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12조)

3. 관련현황

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설치근거	기능	개최실적			위원현황			비고
		'05년	'06년	'07년	계	공무원	외부인사	
주민투표조례 제12조	심의의결	-	-	-	10명	2명	8명	시의원2명 외부인사6명

나. 주민투표조례 제정근거

- 주민투표법(2004. 1. 29 제정)
- 지방자치법 제14조(주민투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기능이 주민투표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있어 심의·의결해야 하고, 입법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정위원회도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현재 시정조정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음. ○ 2004년 이후 주민투표 청구사례가 없고 전문가 등 민간인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주민투표법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운영의 입법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가 있음.

- 다만, 2004년 조례 제정이후 주민투표 청구사례가 전혀 없으므로 주민투표 청구사례 발생시 심의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찬성토론

- 전문가 등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하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290호
의결 년월일	2008. 9. 10 (제146회)

제안년월일 : 2008. 9. 9.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주민투표법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운영의 입법취지가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가 있음.
- 다만,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주민투표 청구사례가 전혀 없으므로 주민투표 청구사례 발생시 심의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주요골자

- 제12조를 용어의 표준화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현행 조례대로 하고 다만, 제5항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위촉 또는 임명은 주민투표청구 심의사유 발생 등 필요시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해당 사유가 종료됨으로써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로 수정함(안 제12조)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를 용어의 표준화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정비(신·구조문 대비표 참조)하여 현행 조례대로 하고 다만, 제5항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위촉 또는 임명은 주민투표청구 심의사유 발생 등 필요시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해당 사유가 종료됨으로써 자동으로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동일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p> <p>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p> <p>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p> <p>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p> <p>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②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p> <p>③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다만, 주민투표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p> <p>2.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p> <p>3.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제12조(주민투표청구에 따른 심의·의결)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p> <p>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p> <p>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p> <p>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p> <p>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p> <p>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p> <p>2. 이의신청의 심사 및 결정</p> <p>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및 결정</p> <p>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②심의회는 의장과 부시장이 된다.</p> <p>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p> <p>④심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다만, 주민투표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p> <p>2.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p> <p>3. 그 밖에 주민투표 관련 분야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대표 등</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⑥심의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p> <p>⑦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⑧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p> <p>⑨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위촉 또는 임명은 주민투표청구 심의사유 발생 등 필요시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해당 사유가 종료됨으로써 자동으로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할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p> <p>⑥심의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이를 소집한다.</p> <p>⑦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⑧심의회는 안전심의회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p> <p>⑨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p>

[수정안 포함]

부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주민투표조례”를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및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시·구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제5조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서명요청권위임신고

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90일이내”을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명 하고자 하는”을 “서명하는”으로 한다.

제9조 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하는 주민이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고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 및 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및 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다만, 주민투표업무담당국장은 당연적으로 한다.

2. 부천시의회장이 추천하는 자

3. 그 밖에 주민투표 관련분야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대표 등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위촉 또는 임명은 주민투표청구 심의사유 발생 등 필요시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해당 사유가 종료됨으로써 자동으로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할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⑦ 심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는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로 하고,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14일이내”를 “14일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고, “14일이내”를 “14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또는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부·결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를 “20:00부터 다음날 08:00”로 하며,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를 “22:00부터 다음날 07:00”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를 “06:00부터 23:00”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이상”을 “게시판 및 일간신문 중에서 하나 이상”으로 하며, “게재로써”를 “게재하여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p>「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부천시장 귀하</p>			
<p>※ 참고사항 청구의 대상 및 취지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점만 기재하 고, 상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p>			

[별지 제2호서식]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직인)			
※ 참고사항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부천시장 귀하</p>				
<p>※ 참고사항</p> <p>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p>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천 시 장 (직인)</p>					
<p>※ 참고사항</p> <p>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p>					

청 구 인 서 명 부

연번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서명일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 「작성요령」

-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부천시장 귀하</p>				
<p>※ 첨부서류: 관련 자료</p> <p>※ 참고사항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부천시주민투표조례</u></p>	<p><u>부천시 주민투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주민투표법</u>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주민투표법</u>」 ----- ----- ----- ----- ----- -----.</p>
<p>제2조(시의 책무) ① (생략) ②시장은 <u>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u> ③ (생략)</p>	<p>제2조(시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u>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u></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외국인으로서는 <u>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이 있다.</u></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구·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구·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및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p> <p>2. 시·구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의</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12조제1항에 따른----- ----- -----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아니하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p> <p>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하는 주민이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③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서명보정기간) <u>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u></p>	<p>제11조(서명보정기간) -----제12제7항에 따른----- --10일 이내-----.</p>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u> 2. <u>이의신청의 심사·결정</u> 3. <u>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u> 4. <u>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u> <p>②<u>심의회</u>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p> <p>③<u>심의회</u>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p> <p>④<u>제3항</u>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다만, 주민투표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u> 2. <u>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u> 3. <u>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u>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u> 2. <u>이의신청의 심사 및 결정</u> 3. <u>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및 결정</u> 4. <u>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 <p>② <u>심의회</u>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p> <p>③ <u>심의회</u>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p> <p>④ <u>심의회</u>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다만, 주민투표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u> 2. <u>부천시의회</u>의장이 추천하는 자 3. <u>그 밖에 주민투표 관련분야에</u>

현행	개정안
<p>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p> <p>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p> <p>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p>	<p>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대표 등</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위촉 또는 임명은 주민투표청구 심의사유 발생 등 필요시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해당 사유가 종료됨으로써 자동으로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할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p> <p>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이를 소집한다.</p> <p>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⑧ 심의회는 안전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p> <p>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3조(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u>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u>에 <u>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u> 교부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u>14일 이내</u>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u>14일 이내</u>로 한다.</p> <p>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3조(처리기간) ① ----- -----<u>청구인대표자증명서</u> <u>의</u>-----<u>7일 이</u> <u>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u>----- -----.</p> <p>② -----<u>제12조제3항 및</u> <u>제5항에 따른</u>----- ----- -----<u>14일 이내</u> ----- -----<u>제12조제7항에 따른</u>----- ----- -----<u>14일 이내</u> -----.</p> <p>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u>청구인 대표자증명서의 교부 또는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부·결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u>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u>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u>제22조제2항에 따라</u>----- -----<u>20:00부터 다음날</u> <u>08:00</u>----- ----- -----<u>아니 된다.</u></p>

현행	개정안
<p>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시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이상과 시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p>	<p>제16조(공표방법 등) ----- ----- -----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게시판 및 일간신문 중에서 하나 이상-----게재하여야-----.</p>

<관계법령발췌서>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②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③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⑨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第10條(滯留資格) ①外國人으로서 入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滯留資格을 가져야 한다.<改正 1996.12.12>

②1회에 부여할 수 있는 滯留資格別 滯留期間의 上限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6.12.1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28의3. 영주 (F-5)	<p>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홍행(E-6) 자격을 제외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p> <p>나.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및 대한민국에서의 출생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한 자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p> <p>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p> <p>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p> <p>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p> <p>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자격(이에 해당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있었던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p> <p>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이 있는 자로서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p> <p>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p> <p>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p> <p>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p> <p>카. 60세 이상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수령하고 있는 자</p>

○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별표에서 정한 적용비율로 산정하는 수 이상으로 한다.

[별표]

주민투표 청구권자 산정기준(제 5조 관련)

인구규모 (20세 이상 주민수)	적용 비율	인구규모 (20세 이상 주민수)	적용 비율
1만5천 미만	1/5	25만 이상 30만 미만	1/13
1만5천 이상 3만 미만	1/6	30만 이상 50만 미만	1/14
3만 이상 5만 미만	1/7	50만 이상 100만 미만	1/15
5만 이상 7만 미만	1/8	100만 이상 150만 미만	1/16
7만 이상 10만 미만	1/9	150만 이상 200만 미만	1/17
10만 이상 15만 미만	1/10	200만 이상 250만 미만	1/18
15만 이상 20만 미만	1/11	250만 이상 500만 미만	1/19
20만 이상 25만 미만	1/12	500만 이상	1/20